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7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안상훈·김선교·박상웅

이성권 · 서천호 · 박덕흠

박준태 · 임이자 · 한지아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
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	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3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u>구성하며</u> , 단장	<u>구성하되, 「정신</u>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
	센터 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
	<u> </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